

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 
증진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권영식 의원 발의】



2020. 5. 1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

## 증진에 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12호로 2020년 4월 1일 권영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(안 제3조 및 제4조)
- 나.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다. 아동의 놀이 활동 관련 실태조사(안 제6조)
- 라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사업(안 제7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0. 2. 20. ~ 2. 24.)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은

가.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나.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활동 관련 실태조사 및 놀 권리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다. 안 제8조에서는 아동놀이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

라.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교육·홍보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에 따라 아동이라면 놀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, 과도한 사교육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<sup>1)</sup>에 머무르는 실정임.

따라서,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,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1) 보건복지부 ‘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’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아동복지법

**제2조(기본 이념)**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,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.

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.

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.

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아동"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
2. "아동복지"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서적 지원을 말한다.

3. ~ 11. (생략)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,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

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

## 2 유엔아동권리협약

**제31조(휴식과 예술활동 등에 참가할 권리)** 1.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,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.

2. 당사국은 문화적·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, 문화, 예술,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.